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06. 11. 2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. 10. 12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6. 10. 13.
- 다. 상정일자 :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06.11.2)
상정, 심사,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박도식 도시관리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원인자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- 기반시설부담금의 서울특별시교부금,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위임수수료 및 서울특별시의 출연, 보조 또는 융자금 등 특별회계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-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,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, 기반시설부담금의 서울특별시 교부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다. 재정근거

-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(제정 2006.1.11 법률 제7848호)

3. 검토보고의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2006.1.11 제정 공포된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,

주요내용을 보면, 안 제3조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세입은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 위임수수료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출연·보조 또는 융자금 등으로 하며,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,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세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음.

- 이는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(2006.1.11 법률 제7848호)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등의 규정에 의거,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.

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 100분의 300이, 서울특별시에 100분의 700이 각각 귀속되고, 서울특별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금 중 해당 귀속분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반

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가 있는 자치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자의 확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.

- 동 조례안 중 수정할 사항을 보면, 안 제4조제1항중 “영”은 약칭을 사용하여 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으로 하고 “시교부금”은 “서울특별시 교부금”으로 각각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

- 질의요지(정해원 위원) : 기반시설은?
- 답변요지(박도식 도시관리과장) : 도로, 공원, 녹지, 수도, 하수도, 학교,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임.
- 질의요지(윤동현 위원) :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교부액이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?
- 답변요지(박도식 도시관리과장) : 20m 이상도로, 공원 등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어 불합리한 것은 아님.

5. 토론판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06. 11. 2.
제 안 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동조례안 일부조항중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“영” 을 “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으로
하고, “시교부금” 을 “서울특별시교부금”으로 함(안 제4조)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 다음과
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중 “영” 을 “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
“영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“시교부금”을 “서울특별시교부금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4조(세입) —————</p> <p>① <u>별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시교부금</u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4조(세입) —————</p> <p>①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이하 "영"이라 한다) —————</p> <p>-- <u>서울특별시교부금</u></p> <p>② ~ ③ (원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6. 10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원인자·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.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- 나. 기반시설부담금의 서울특별시교부금,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위임수수료 및 서울특별시의 출연, 보조 또는 융자금 등 특별회계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다.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,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,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교부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3. 제정근거

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<제정 2006. 1. 11 법률 제7848호>

4. 조례(안)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6. 기타사항

- (1) 입법예고(2006. 8. 10 ~ 2006. 8. 30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.
- (2)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·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6. 10. 9). 끝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"기반시설"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.
- ② "기반시설부담금"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)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4조(세입)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①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시교부금
- ②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 위임수수료
- ③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출연·보조 또는 읍자금

제5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①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
- ②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
- ③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

제6조(준용)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